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2,351,159	20,770,535
일반회계	601,207,341	18,036,220
특별회계	91,143,818	2,734,315
공기업특별회계	81,075,333	2,432,2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036,937	661,10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990,243	1,349,7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048,153	421,445
기타특별회계	10,068,485	302,055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14,800	15,44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56,252	40,68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716,913	81,507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2,874	93,386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4,900	11,847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918,200	57,546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54,546	1,636

제 2 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521,23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7 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